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596
----------	-----

발의연월일 : 2009. 11.23

발 의 자 : 조신형 의원의 6인

1. 제정이유

고령화시대를 맞아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수노인, 장수축하금, 장수시민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장수축하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장수시민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지급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2010년 7월 예산반영 계획
- 다.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노인복지과와 협의
- 라. 기 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시민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수노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장수축하금) ①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9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 95세 및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부의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을 해당월에 지급한다.

제5조(장수시민증) ①장수시민증의 수여대상자는 수여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장수시민증은 증서 또는 증패로 제작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장수시민증 수여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하되, 수여대상자의 생일 또는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에 적의 선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금 지급과 장수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
2. 제6조에 따른 지급제외
3. 제7조에 따른 환수조치
4. 제8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첫해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은 100세로 보고 장수축하금과 장수시민증을 지급 또는 수여한다.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7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25 조신행의원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09. 11. 25

다. 상 정 일 자 :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2.17)

상정, 질의,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신행의원)

1. 제안이유

- 고령화시대를 맞아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수노인, 장수축하금, 장수시민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수축하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수시민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급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태환)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 제4항에서 장수축하금 신청 시기를 주민등록상 90세, 95세 100세가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우리시에 살아계시는 90세 이상 장수어르신 모두에게 지급되는 장수 축하금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장수어르신 대부분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으며 또한 핵가족화의 가정이 대부분임을 감안 신청 시기를 주민등록상 90세가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수혜 대상 장수어르신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96
----------	-----

제안연월일 : 2009. 12. 17.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우리시에 살아 계시는 90세이상 장수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장수축하금 신청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장수축하금) 중 90세이상 장수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장수축하금 신청시기를 주민등록상 90세, 95세, 100세가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수정함.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장수축하금) 중 장수축하금 신청시기를 주민등록상 90세, 95세, 100세가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를 “3개월 이내” 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장수축하금) ④장수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제4조(장수축하금) ④장수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